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[별지 제13호서식] <개정 2019. 4. 25.>

(앞쪽)

제 호

유원시설업 [ ]허가증 [ ]조건부 영업허가증

※ [ ]에는 ∨ 표시를 합니다.

1. 영업소 명칭	
2. 소 재 지	
3. 영업의 종류	
4. 대표자 성명	
5. 대표자의 생년월일	
6.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수 (종 수)	
7.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수 (종 수)	
8. 허가조건	
9. 영업기간 (6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	

「관광진흥법」 제5조제2항·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·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
특별자치도지사·
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

210㎜×297㎜[백상지(150g/㎡)]

(뒤쪽)

허가번호 :		
변경 및 처분사항		
연월일	내용	확인[인]